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준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44

발의연월일: 2024. 7. 3.

발 의 자:정준호·서미화·윤후덕

김한규 · 박희승 · 민병덕

윤종군 • 민형배 • 이연희

김성환 · 서삼석 · 임미애

박정현 · 양부남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도로, 철도, 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 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.

그러나 현재 도시철도운영자는 65세 이상 노인·장애인·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「노인복지법」, 「장애인복지법」 및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전무함에 따라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해 도시철도서비스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 및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.

이에 도시철도운영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 적 등을 위하여 도시철도운임·요금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에 대하 여 「교통시설특별회계법」을 통해 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 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5조의2제2항제2호의2 신설 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정준호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1343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같은 법률안이 의 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운용"을 "운용 및 지원"로 한다.

제5조의2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「도시철도법」 제31조의2에 따른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

부 칙

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조(목적) 이 법은 도로, 철도,	제1조(목적)		
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			
효율적인 관리· <u>운용</u> 을 위하여			
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함을	및 지원		
목적으로 한다.			
제5조의2(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	제5조의2(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		
입 및 세출) ① (생 략)	입 및 세출) ① (현행과 같음)		
②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출은	②		
다음 각 호와 같다.			
1. • 2. (생 략)	1. • 2.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2의2. 「도시철도법」 제31조의		
	2에 따른 공익서비스 제공으		
	로 발생하는 비용		
3. ~ 12. (생 략)	3. ~ 12. (현행과 같음)	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		